

## 화천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모집 공고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소방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진압·구조·구급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 할 화천군 관내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5일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소방서장

### 1 근거법령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의용소방대의 임명)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(임명구비서류)
- 「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임명)

### 2 모집인원 및 기간

- 모집인원 : 화천군·읍·면 의용소방대원 00명
- 모집기간  
※ 연중 수시모집 (별도 문의)

### 3 자격요건

- 각 지역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법정동 기준)
  -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
  -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
  -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- 소방기술 관련 자격·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
  - 의사·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

### 4 모집방법
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입대

### 5 제출서류

- 입대신청서 1부.
- 이력서 1부.
-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.(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- 주민등록등본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) 1부.(입대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 1부.

### 6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연중 수시접수
- 교부 및 접수처 : 화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및 각 지역 관할 119안전센터
- 접수방법 : 소방서 방문접수(메일·우편·팩스 접수 불가)
- 제출되는 서류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입니다.

###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

- 서류심사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, 서류심사 및 해당 지역 의소대장과 협의하여 최종합격자 결정
  - 합격자 확인 : 개별통보(유선, 문자)
  - 최종합격자 발표 : 소방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화천소방서 대응총괄과(033-440-7311)**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 구역
2.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
  3. 입대신청서(서식)
  4. 이력서(서식). 끝.

**붙임 1 의용소방대 명칭과 관할 구역**

서별	명 칭	관 할 구 역	관할 안전센터
화 천 소 방 서	화천남성의용소방대	화천군 화천읍 일원	화천119안전센터 (440-7511~2)
	화천여성의용소방대		
	하남남성의용소방대	화천군 하남면 일원	
	하남여성의용소방대		
	상서남성의용소방대	화천군 상서면 일원	상서119지역대 (440-7530-2)
	상서여성의용소방대		
	간동남성의용소방대	화천군 간동면 일원	간동119지역대 (440-7540-2)
	간동여성의용소방대		
	사내남성의용소방대	화천군 사내면 일원	사내119안전센터 (440-7521-2)
	사내여성의용소방대		
	봉오전담의용소방대	화천군 봉오리 일원	화천119안전센터 (440-7511~2)
	파포지역의용소방대	화천군 파포리 일원	
	유촌지역의용소방대	화천군 유촌리 일원	
	다목지역의용소방대	화천군 다목리 일원	

### 붙임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

1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 나목4)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“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.
  - 가.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
  - 나. 화공기술사, 화공기사, 화공산업기사
  - 다.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기능장, 전기공사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
  - 라. 건축사, 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
  - 마.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
  - 바. 가스기술사, 가스기능장, 가스기사, 가스산업기사
  - 사.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건축설비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
  - 아.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,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
2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 나목4)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“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소방안전관리학과(소방안전관리과, 소방시스템과, 소방학과, 소방환경관리과,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)
  - 나.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 및 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)
  - 다.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)
  - 라.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)

- 마.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)
  - 바.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)
- 사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1)의 (다) 및 (라)에 해당하는 학과(방염처리업에 한정한다)
- 아.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
3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 나목(4)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“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  - 가.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공사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,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
  - 나. 한국소방안전협회,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(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)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
  - 다.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

